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30

서 울 행 정 법 원

2001. 7. 25. 판결선고	인
2001. 7. 25. 원본영수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00구3207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 고 참여연대

피 고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01. 6. 20.

주 문

- 피고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처분의 경위(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예산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2000. 6. 29. A와 함께 학술연



구 및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각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및 1999년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위 공개청구된 정보 중 각 ‘1999년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 부분에 관하여는 공개를 결정하였거나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을 통보하되, ‘이 사건 정보’ 부분에 관하여는 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 별지 제1목록 기재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만,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0. 7.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부분에 관하여는 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한 다음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는 법인이나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이 식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현금을 지급한 것은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프라이버시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식대 등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의 참석자, 불우 주민, 이재민들의 격려·위로 등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명목으로 지출되는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 관련 증빙서류가 공개된다면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피고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민생치안관련방범활동비 등 경찰 등에 지원한 금액의 지출증빙에 관한 서류는 피고들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며,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포괄적 성격상 그 지출증빙서류 등을 공개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2000. 9. 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0차 공동 회장단 회의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별 설정에 맞게 지역협의회별 판단에 의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0. 10. 6.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를 신문지상에 공표함과 아울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피고



들이 2000. 1. 1.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총괄집행 및 성질별 집행내역을 공개하였으며, 그 집행내역 중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의 사본까지 열람할 수 있게끔(다만, 지출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개인의 실명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하여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해당 부분을 가린 다음) 해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주면 해당 부분을 사본하여 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서와 같이 모든 문서의 사본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그 복사할 문서의 양이 읊2호증의 2의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및 서초구를 제외하더라도(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이 사건 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역시 제외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추산부(현금출납부) 383권 2,740매, 일상경비정리부 627권 2,894매, 집행서류철 1,729권 45,867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추산부(현금출납부) 759권 4,359매, 일상경비정리부 874권 5,059매, 집행서류철 2,241권 89,465매로 합계 6,613권 150,384매에 이르는 방대한 양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부 복사하여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면 구청의 업무가 마비될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다른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 업무의 파탄을 가져와 결국 공익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 할 수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소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자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판 단

(1)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 제12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있어서도 그 중 비공개할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가리고 복사 또는 출력하여 그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면 위 비공개되는 부분과 공개되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공



개신청정보 중 비공개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당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쳐분을 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보 전부가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여부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작비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고, 이 사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편성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는 것 외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하는 것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헌법 및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증빙 중에는 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그러한 사항들은 공적인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정보임과 동시에 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 개인에 관한 정보의 성격도 띠고 있어서 일상 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도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지출목적이 공적인 업무에 제한되어 있고 그 집행업무가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는 이상, 그 지출 증빙이 당해 개인과 관련하여 가지는 정보의 가치는 ‘당해 공무 집행과정에 참석하였거나 예산집행에 따른 금품 수령자가 누구인가’ 하는 정도 이상의 것은 아니어서,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개인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초래되리라 보이지도 않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증빙내용 중에 수령자나 참석자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은 실제 집행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일 뿐 아니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공개된다



면 정보공개제도의 본지를 현저히 훼손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이는 점, 그 외 그와 같은 사항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으로 시정 참여를 기피 한다거나 행정당국으로서 공개를 의식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 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삭제하거나 가리는 방식으로 공개하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전체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정보를 각 비공개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에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기관운영업무추



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운영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d) 기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제7조 제1항 제3호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및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각 그 해당 비공개처분의 근거로 이 사건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비공개사유를 명기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위 피고들이 각 그 해당 비공개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2)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등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해당 비공개처분의 근거로 이 사건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비공개사유를 명기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가 이를 해당 비공개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해당 비공개처분의 근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 시까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유는 법이 정한 비공개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이를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비공개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등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미보유 정보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사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제3조가 정보공개의 대상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이 사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피고들을 비롯한 각 구청 공무원에 의하여 최종 지출되고 그에 대한



지출증빙이 작성되어 이를 피고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미보유 정보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원래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별도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위법여부의 판단은 처분 당시의 사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당초 행정청에 의해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었다가 그 후 행정청이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이로써 그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을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0. 11. 29.경 신문지상에 피고들이 2000. 1. 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전체 사용액을 공표하였고, 그 총괄집행내역과 월별 집행내역 및 성질별 집행내역을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들을 비롯한 각 해당 구청 공무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작성한 지출증빙인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공개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중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지출결의서와 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



서류의 사본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이고 원고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주면 해당 부분을 사본하여 주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상 위와 같은 공개의 제의에 의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달성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당초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청구된 공개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또 사본 교부의 방법에 의해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많다는 사유로 그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 된다고까지 할 수도 없으며, 한편 피고들이 주장하는 문서의 양은 피고들 해당 정보의 양을 전부 더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별로 나눌 경우 그 주장과 같은 막대한 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시에 상당한 양에 달하는 1999년도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결정을 하였거나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점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30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문서의 양이나 을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각 그 공개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전체로서 위법하므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7. 25.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김동석 _____

판사 고홍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30

제 1 목 록

(제 1 목 록 삭제)

제 2 목 록

(제 2 목 록 삭제)